

등록번호	의약과-5275
등록일자	2015.3.10.
결재일자	2015.3.1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약무팀장	의약과장	보건소장	
최영미	이은주	03/10 홍혜정	
협조			

2015년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계획



2015년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계획

우리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원외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경우 발생하는 1,2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보건의료 접근도를 향상시키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I 추진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보건소 진료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방침(시장방침 637, 2000.06.19.)

II 추진현황

- 지원내역

구분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지원건수	지급업소수	비고
	계	시비	구비				
2012년	10,000	6,000	4,000	8,655	7,213	15	시비 60% 구비 40%
2013년	10,000	6,000	4,000	6,115	5,096	14	
2014년	8,000	4,800	3,200	7,999	6,666	14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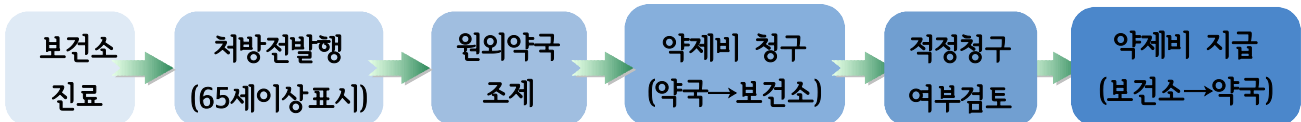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 : 중구보건소에서 처방받은 65세이상 어르신
- 지원요건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별표4]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환자의 연령	본인 부담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방전에 의거 의약품 조제 - 조제비용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65세 이상	1,200원

- 지원기준 : 조제 1건당 1,200원
- 운영방법

- 운영 절차



- 약제비 청구서

- 청구서에 처방전 교부일자, 교부번호, 환자이름, 생년월일, 조제일수, 총약제비,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처방 의사명 및 비고란에는 대체조제시 표시

- 청구내용 검토

- 담당자가 보건소 약국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중구보건소 처방전 발행여부, 65세이상 어르신환자 여부, 건강보험환자 여부 및 총약제비 요건 적정여부 등 검토

- 약제비 지급
 - 시비보조금 교부 확인 후 분기별 지급
 - 적정 약제비 청구분에 대하여 약국개설자에게 온라인 송금 및 정산 처리

IV

예 산

- 소요예산 : 8,040,000원(시비 60%, 구비 40%)
 - 시비 4,824,000원, 구비 3,216,000원

